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3. 6. 26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 7. 1

다. 상정일자 : 제127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6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청소년분야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설치·운영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문제에 대처하고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
- 지방청소년실무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 정함.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에 관하여 정함.
- 차세대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본 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에 의한 지방 청소년위원회와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동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따른 자격, 임무, 임기 등을 정하고 청소년만으로 구성되는 차세대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내용으로 청소년기본법에 위배되지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5. 토론요지(수정발의 김경차 의원 외 1)

제정안의 제19조에서 청소년 지도위원의 수를 20인 이내로 제한을 두면 효과적인 지도활동을 전담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청소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는 사업으로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도위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제19조(지도위원의 수)의 “지도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를 “지도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6.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

제출안	수정안
제1조 ~ 제18조(생략)	제1조 ~ 제18조(제출안과 같음)
제19조(지도위원의 수) <u>지도위원의 수는 2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u>	제19조(지도위원의 수) <u>지도위원의 수는 60인 이내로 하되 지역 여건(인구, 학교소재 등)을 참작하여 위촉한다.</u>
제20조 ~ 제32조 (생략)	제20조 ~ 제32조 (제출안과 같음)
부 칙 (생략)	부 칙 (제출안과 같음)
별표 (생략)	별표 (제출안과 같음)